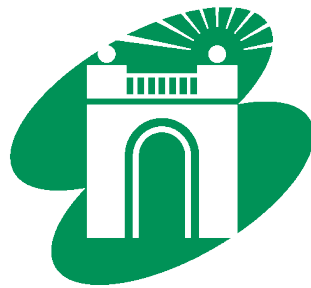


등록번호	일자리경제과-26255
등록일자	2015.7.3.
결재일자	2015.7.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일자리정책팀장	일자리경제과장	경제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박선우	박우동	오경찬	김종두	조인동	07/06 문석진
협 조					

- 근로자의 최소생활수준 보장 -

2016년 생활임금제 추진계획



서대문구
일자리경제과

2016년 생활임금제 추진계획

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최소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'서대문구 생활임금제'를 추진하고자 함

I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('15.4.15.공포, '15.7.1.시행)
 - 생활임금수준, 생활임금적용대상, 생활임금결정,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정

II

생활임금제 개요

① 「생활임금」 개요

■ 개념

주거비, 교육비,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근로자의 실제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

※ 최저임금(고용노동부), 최저생계비(보건복지부)와 대비되는 개념

■ 적용대상

생활임금기준월액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자로 선정
- 구분청 및 도시관리공단 직접 채용근로자(기간제, 일용직, 단시간근로자 등) 149명(구분청 14개부서 114명, 도시관리공단 35명)

■ 임금적용방법

생활임금기준월액 - 보수월액(기본급+교통비+식대) = 생활임금보전수당

예) 주40시간(월209시간)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생활임금기준월액이 1,397,583원, 보수월액이 1,284,000원인 경우 그 차액인 113,583원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

■ 적용시기 : 2016.1.1. 부터

2 추진배경

-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생활수준 보장이 안됨
- '14년 기준 월 1,089천원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(1,664천원)의 65%수준
-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「생활임금제」 도입 필요
- 2015년 생활임금제 시행 : 서울시, 종로구, 도봉구, 성북구, 노원

3 추진경과

- 2014.7.30. :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(정책기획담당관)
- 2014.9.11. : 조례안 구의회(행정복지위원회) 보류결정
- 2015.3.26. : 조례안 구의회(행정복지위원회) 수정가결
- 2015.4. 9. : 조례안 구의회 의결
- 2015.4.13. : 생활임금 업무 및 자료 이관(정책기획담당관→일자리경제과)
- 2015.4.15 : 조례 공포(2015.7.1. 시행)

III

서울시 및 타구 생활임금제 시행현황

(2015년, 월 209시간 기준)

구 분	서울시	종로구	도봉구	성북구, 노원구
생활임금수준	시급 6,687원 (최저임금의 120%) 월 1,397,583원	시급 6,737원 (최저임금의 121%) 월 1,408,000원	시급 6,970원 (최저임금의 125%) 월 1,456,730원	시급 7,150원 (최저임금의 128%) 월 1,495,000원
생활임금포함임금항목	기본급+교통비+식대	기본급+교통비+식대	기본급+교통비+식대	정액급여 (기본급+제수당+연월차수당 등)
산정근거	◦ 월평균가계지출 (통계청) - 전국3인가구 - 2013년 연평균	◦ 월평균가계지출 (통계청) - 전국3인가구 - 2014년 3분기 기준	◦ 월평균가계지출 (통계청) - 도시근로자3인가구 - 2014년 3분기 기준	◦ 2013년연간5인이상상시고용노동자 평균임금 (고용노동부) ◦ 서울시생활물가반영분 (서울시)
적용대상	서울특별시 및 투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	종로구 소속 근로자와 종로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	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	구청 소속 근로자와 구청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

※ 서울시 및 타구 생활임금제 산정 근거 - 별첨1.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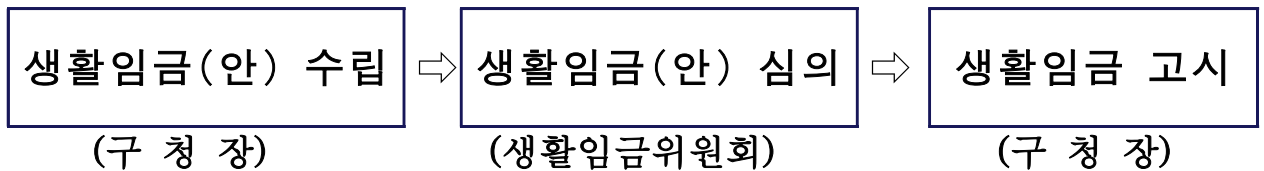
생활임금 추진계획

1 적용대상 범위(조례 제3조)

-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
- 서대문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
- 제외자
 -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
 -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

2 생활임금 결정 절차

-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생활임금(안)을 심의후 구청장이 9월 10일까지 고시



-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」로 ‘생활임금위원회’ 설치 및 운영
 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7명이상 11명 이하
 - 위원의 임기 : 2년(1회 연임 가능)
 -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: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 - 생활임금 고시
 - 표기단위 : 시간급(최저임금과 비교 용이)
 - 표기방식 : 생활임금액 [최저임금×1□□%(생활임금조정율)]
- ※ 2015년 최저임금 5,580원(고용노동부, 매년 8월 고시)

③ 생활임금 수준 산정(안) :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적용

■ 생활임금 산출내역

$$\text{시급} = [\{ (a) \times 1/2 \} + (b) + (c)] \div 365\text{시간} \times (d)$$

- ① (a) :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
⇒ 빈곤기준선(전국 평균지출의 50%) 적용
- ② (b) : 주거비(최소주거기준(36㎡)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)
- ③ (c) : 사교육비(서울평균의 50% 적용)
- ④ (d) : '15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
- ⑤ 365시간 : 전일제근로자 월 209시간, 시간제 근로자 월 156시간으로 가정

■ 생활임금 적용 방법

-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: **기본급, 교통비, 식대**

- 이외 기타수당(위험수당, 위생수당, 처우개선 수당 등)은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,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

- 생활임금 적용방안

- 근로자의 기본급, 교통비, 식대의 보수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대비 차액만큼 '생활임금 보전수당' 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
 - ▶ 주40시간(월209시간)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: **월액 기준 비교 적용**
 - ▶ 주40시간(월209시간) 미만 근로자 : **근로시간 비례적용**

※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과 생활임금 적용방법은 「서울형 생활임금」 표준 매뉴얼(2015.3.24., 서울시노동정책과) 반영(준용)

④ 부서(기관)별 적용대상자 선정 및 예산편성

■ 각 부서(기관)에서는 생활임금 수준, 적용방법,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'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' 대상자를 선정 및 생활임금 적용, 인건비 편성

- 미달되는 임금수준(차액)만큼 '생활임금 보전수당'으로 임금 보전
- '생활임금 보전수당' 임금항목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(근로기준법 제17조)

〈근로기준법〉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,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1. 임금

① 조사대상

- 구분청 : 14개부서 114명
- 도시관리공단 : 사무보조, 시설관리, 주차단속 등 35명
※ 2015년 비정규직 현황(2015.5.31.기준) - 별첨2.

② 조사방법

- 2015년 시행중인 서울시 및 자치구(4개구)의 보수월액 또는 총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시된 생활임금 시급 최고액 7,150원과 최저액 6,687원 적용 대상자(기간제, 일용직, 단시간 등) 조사
- 생활임금 월액보다 보수월액(기본급+교통비+식대) 또는 총임금액이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차액을 반영 인건비 추가 산정

③ 조사결과

구분	생활임금액(6,687원)		생활임금액(7,150원)	
	기본급+교통비+식대 (1안)	총 임 금 액 (2안)	기본급+교통비+식대 (3안)	총 임 금 액 (4안)
적용대상	7개부서 47명	7개부서 47명	10개부서 76명	8개부서 49명
생활임금 보전예산액	86,042천원	59,793천원	153,048천원	110,807천원

※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조사결과 - 별첨3.

- 생활임금포함 임금항목으로 보수월액(기본급+교통비+식대)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(1안, 3안)
 - 생활임금 산정근거, 적용방법, 적용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액(시급) 변경
- 서울시 및 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액인 보수월액(기본급+교통비+식대)을 적용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VI

추진일정

- 서대문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: 2015. 7월중
- 서대문구생활임금(안) 수립 : 2015. 8월중
- 서대문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: 2015. 9. 3(목) 11:00(예정)
 - 위촉장 수여, 위원장·부위원장 호선, 생활임금(안) 심의·의결
- 2016년서대문구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: 2015.9.10
- 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기준마련 및 통보 : 2015.9.15.(예정)
 - 서울형생활임금 반영(준용)하여 구분청 및 도시관리공단 통보
 -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'16년 예산편성 교육

VII

행정사항

- 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제 추진계획 통보 : 전부서
-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2016년 예산편성 교육 : 구분청, 도시관리공단

붙임 : 1. 서울시 및 타구 생활임금 산정근거 1부.
2. 2015년 비정규직 현황 1부.
3. 생활임금포함 임금항목 비교 적용 1부. 끝.